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지방공무원 정원 규칙 일부개정 규칙안

1. 제안이유

찾아가는동주민센터 2단계 사업시행에 따라 사회복지직을 증원하고, 전직시험에 합격한 관리운영직군의 일반직으로의 전직 임용을 위해 정원 규칙을 일부개정 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찾아가는동주민센터 2단계 사업 추진에 따른 사회복지직 정원 조정 (안 별표)

- 서울시 찾아가는동주민센터 사업을 전 동으로 확대하는 데 필요한 **사회복지직 정원 62명 증원**(총 정원 1,208명→1,270명)
 - 동 정원 62명 증원(225명→287명)

나. 지방공무원의 구분 변경에 따른 전직시험에 합격한 관리운영직군의 전직 임용을 위한 정원 조정(안 별표)

- 전직시험 합격자에 해당하는 관리운영직군의 정원을 감축하고 그에 상응하는 전직예정 직급의 정원을 증원하여 전직 임용(8명)
 - 증원직렬 : 행정7급 4명, 공업(전기)6급 1명, 공업7급 3명(전기 2, 기계 1)
 - 감원직렬 : 사무운영7급 3명, 사무운영8급 1명, 전기운영6급 1명, 전기운영8급 2명, 기계운영8급 1명

다. 기능분야 신규인력 채용에 따른 정원 및 직급 조정(안 별표)

- 청사 방호인력 보강에 따라 관리운영직군의 자연감소분을 조정하여 방호직 정원 2명 증원
 - 사무운영8급 2명 감원→방호9급 2명 증원

- 시설관리직 신규채용을 위해 직렬 내 현원 비율에 맞춰 직급 조정
 - 시설관리8급 8명 감원→시설관리9급 8명 증원

라. 임기제공무원의 직급 조정(안 별표)

- 2013년 평생학습도시 지정 이후 구 특화사업 발굴·추진의 중요성 증대에 따라 전문성 강화를 위한 임기제공무원 직급 조정 및 직렬명 표기 정비
 - 임기제(행정-평생학습사)8급 1명 감원→임기제(행정-평생교육사) 7급 1명 증원
- ※ 평생교육법 제24조에 의한 평생교육 전문인력 국가자격증 : 평생교육사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1)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24조
- 2)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30조
- 3) 지방공무원의 구분 변경에 따른 전직임용 등에 관한 특례 규정

나. 예산조치 : 보조금 교부 등 인건비 확보 필요

다. 기 타

- 1) 입법예고 : 2015. 12. 16. ~ 12. 22. (6일간)
- 2) 신·구조문대비표 : 별첨
- 3) 규제심사 : 해당사항 없음
- 4) 성별영향평가 결과 : 해당사항 없음
- 5) 부패영향평가 결과 : 대상 아님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지방공무원 정원 규칙 일부개정 규칙안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지방공무원 정원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를 별지와 같이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정원에 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으로 감축되는 정원에 해당하는 초과 현원이 있는 경우 초과 현원 해소 시까지 정원이 따로 있는 것으로 본다.

현 행							개 정 안						
【별표】 정원관리기관별 직급·직렬별 정원							【별표】 정원관리기관별 직급·직렬별 정원						
	총계	구분청	구의회 사무국	직속 기관	사업소	동		총계	구분청	구의회 사무국	직속 기관	사업소	동
총계	1,208	842	29	97	15	225	총계	1,270	842	29	97	15	287
정무직 계	1	1					정무직 계	1	1				
일반직 계	1,195	837	27	97	9	225	일반직 계	1,257	837	27	97	9	287
3급 소계	1	1					3급 소계	1	1				
4급 소계	7	5	1	1			4급 소계	7	5	1	1		
5급 소계	55	31	2	8		14	5급 소계	55	31	2	8		14
6급 소계	240	180	5	20	3	32	6급 소계	240	180	5	20	3	32
공입	2	2					공입	3	3				
전기운영	1	1					(삭제)						
이하 계(현행과 같음)	237	177	5	20	3	32	이하 계(현행과 같음)	237	177	5	20	3	32
7급 소계	375	261	10	26	3	75	7급 소계	380	266	10	26	3	75
행정	197	131	3	6	1	56	행정	201	135	3	6	1	56
공입	9	8			1		공입	12	11			1	
(신설)							임기제 (행정-평생교육사)	1	1				
사무운영	6	6					사무운영	3	3				
이하 계(현행과 같음)	163	116	7	20	1	19	이하 계(현행과 같음)	163	116	7	20	1	19
8급 소계	376	264	5	38	3	66	8급 소계	361	249	5	38	3	66
임기제 (행정-평생학습사)	1	1					(삭제)						
전기운영	3	3					전기운영	1	1				
기계운영	3	3					기계운영	2	2				
사무운영	13	11	1			1	사무운영	10	8	1			1
시설관리	19	19					시설관리	11	11				
이하 계(현행과 같음)	337	227	4	38	3	65	이하 계(현행과 같음)	337	227	4	38	3	65
9급 소계	139	93	4	4		38	9급 소계	211	103	4	4		100
사회복지	26	14				12	사회복지	88	14				74
(신설)							시설관리	8	8				
방호	1		1				방호	3	2	1			
이하 계(현행과 같음)	112	79	3	4		26	이하 계(현행과 같음)	112	79	3	4		26
전문경력관	2	2					전문경력관	2	2				
별정직 계	5	3	2				별정직 계	5	3	2			
연구직 계	7	1			6		연구직 계	7	1			6	

관계 법령

□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시행 2015.11.19. 대통령령 제26651호, 2015. 11. 18. 타법개정)

제24조(정원의 관리)

- ① ~ ④ 생략
- ⑤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효율적인 정원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정원의 관리기관별 지방공무원의 정원을 조정할 수 있다.

제30조(정원의 규정)

- ① 생략
- ② 지방공무원의 직급별 정원[「지방전문경력관 규정」 제2조에 따른 지방전문경력관 (이하 "지방전문경력관"이라 한다)의 정원을 포함한다]은 제1항에 따른 정원의 총수 범위에서 제22조 제2항에 따른 정원관리기관별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다만, 시·도의 5급 이하(시·군·구는 6급 이하) 직급별 정원과 지방전문경력관의 정원은 조례로 그 총수만 정하고 그 범위에서 제22조제2항에 따른 정원의 관리기관별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규칙으로 정한다.
- ③ 지방공무원의 직렬별 정원(지방전문경력관의 경우에는 「지방전문경력관 규정」 제4조제1항에 따른 직위군별 정원을 말한다)은 제1항에 따른 정원의 총수 범위에서 제22조제2항에 따른 정원관리기관별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규칙으로 정한다
- ④ ~ ⑤ 생략

□ 지방공무원의 구분 변경에 따른 전직임용 등에 관한 특례규정

(시행 2014.11.19. 대통령령 제25751호, 2014.11.19., 타법개정)

제3조(관리운영직군 공무원의 전직)

-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무원은 「지방공무원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9조의2에 따른 전직시험(이하 "전직시험"이라 한다)을 통하여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기구와 정원에 관한 조례·규칙의 개정으로 감축하는 관리운영직군 직렬에 속하는 공무원의 정원에 상응하여 증원되는 정원이 배정되는 직렬(관리운영직군은 제외한다.이하 같다)에 속하는 공무원으로 전직할 수 있다. 다만, 2013년 12월 12일 이전에 재직 중인 기능5급 공무원이 관리운영직군에 속하는 일반직 6급 공무원으로 임용된 경우에는 전직시험을 거치지 아니하고 전직할 수 있다.